

'19년 제2차 경찰공무원 실기시험 문제지(주관식)

응시계급	순 경	응시분야	수사	응시번호		성 명	
1. 수면 중인 여성 X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구속된 갑은 변호인 L과 동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고 있었다. L이 의자를 갑쪽으로 당겨 앉자 사법경찰관 P는 “저 뒤쪽에 떨어져 앉으라”고 L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자 L의 참여를 제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갑은 L과의 이전 접견에서 “불리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라”는 L의 조언이 떠올라 이후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였다. 갑의 진술거부 이유를 알게 된 P는 L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L이 신청한 2차 접견을 금지하였다. (서술형, 50점) 문1) 사법경찰관 P가 변호인 L에게 취한 조치의 적법성과 구제방법을 논하시오. (30점) 문2) 만일 갑의 무혐의가 밝혀졌으나, X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는데 X가 고소를 망설이고 있다. 이 경우 검사는 X의 고소 전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가? (20점) 2.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약술형, 25점) 3. 수사는 일정한 조건 즉, 일반적으로 범죄혐의, 수사의 필요성, 수사의 상당성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이때 수사의 상당성 개념을 약술하시오. (약술형, 25점)							